CCTV 영상정보에 대한

내부관리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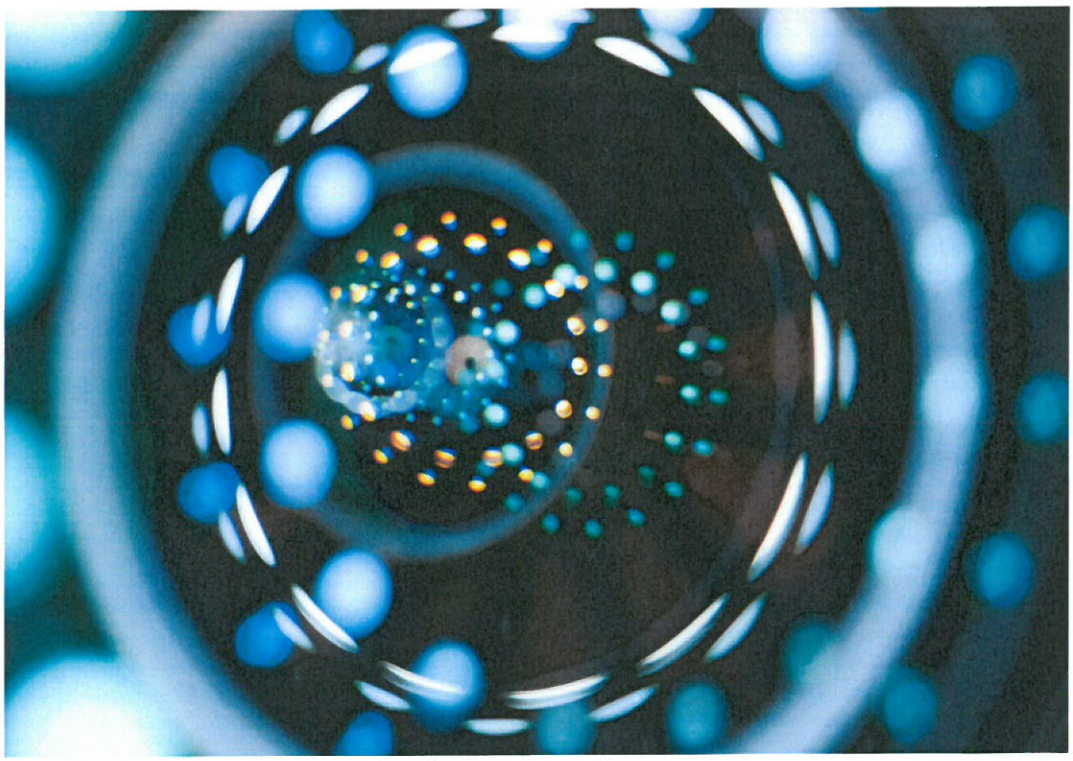

전원일기 요양원

제1장 총칙

제1조(설치목적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CCTV"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2. "화상정보"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"정보주체"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4. "정보처리"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전원일기요양원에 설치·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CCTV운영 및 관리

제4조(책임자지정) CCTV 설치 · 운영 관리책임자(이하 '책임자'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CCTV 설치 · 운영 관리책임자

가.책임자(대표자) : 시설장 (한동일)

나.운영(담당)자 : 사회복지사 (이새봄)

다.모니터링(담당)자 : 요양팀장3명

2.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요양원의 CCTV 설치 운영,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3.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

제5조(CCTV설치) ① CCTV는 총 16대를 설치하며,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.

1.주 출입구 : 1대

2.공용거실 2대, 연결복도 1대

3.일반실 침실 8대, 특별침실 1대

4.프로그램실 1대, 물리치료실 1대, 식당 1대.

②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,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.

1.CCTV 운영 모니터

2.디지털 녹화기

3.그 밖의 부대장치

제6조(안내문부착) 제5조제①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

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호를 참조한 안내판을 주 출입구 및 별관 출입구에 부착한다.

제7조(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) 시설에 설치하는 CCTV 성능,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CCTV 성능 : 200만 화소 이상 (1,280 X 960), 초당 10프레임

2.CCTV 촬영범위 : 주출입구,침실,거실,물리치료실,프로그램실,식당.

3.CCTV 촬영시간 : 24시간 상시 촬영

4.CCTV 보관기간 : 62일

5.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: Ktskylife HCN녹화기

6.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: 원장실

7.영상정보 삭제주기 : 62일 경과 후 자동 삭제.

제3장 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

제8조(운영자의 금지행위) CCTV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.

2.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, 녹음을 하는 행위.

3.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.

제9조(영상정보의 열람) CCTV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·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수급자가 자신의 생명·신체·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.

2.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.

3.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.

4.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5.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.

6.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.

제10조(영상정보 열람 절차 및 방법)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영상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
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,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열람청구를 받은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

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이용·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1.개인정보파일의 명칭

2.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

3.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.

4.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.

5.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
④책임자는 열람시 기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열람의 거부)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다.

1.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연상정보를 파기한 경우.

2.천재지변,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,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.

3.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.

제12조(정보처리의 정정 및 삭제 등) ①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정정(삭제)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

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②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(정보 통신망 포함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1.범죄수사 · 공소유지 ·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.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.

3.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.

4.그 밖의 정정 · 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.

제13조(영상정보 보호조치) ①책임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CCTV 영상정보 접근 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.

③책임자는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장비관리) ①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 · 관리 대장에 따라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 결과를 기록 · 유지하여야 한다.

②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5조(사무의 위탁) ①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·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·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밀유지의무)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준용규정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(보건복지부)」, 「통신비밀보호법」, 「행정절차법」 등을 준용한다.